

# 新國際經濟秩序와 技術移轉 問題



李 丙 昊

<本會理事 辯護士 辦理士>

## 1 國際經濟秩序의 再定立

오늘날 世界는 國際關係에 있어서나 金融係에 있어서 廣域의으로 그리고 急激하게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20年前의 現實과는 判然으로 變貌하고 있다.

지난 數年間 第3世界國家들의 集團意識 다시 말해 非同盟諸國政府의 意識構造는 조금씩 그러나 抑制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참모습을 들어 내었다.

그것은 저들이 2次大戰後 西方 여러 나라들의 植民地로부터 脫皮하여 政治的獨立을 얻고 나서 세삼스레 느끼기 시작한 意識으로서 經濟的獨立 없는 政治的獨立만으로는 名實相符한 獨立國家라 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事實上 經濟的自立 없는 政治的自立은 하나의 空虛한 幻想에 不過하다는 經驗에서 淸楚한 意識構造라 하겠다.

이러한 第3世界國家들이 바라는바는 本質的으로 世界의 所得과 힘(power)의 再分配問題에 歸着된다. 貧富國間의 交易量의 規模라든가 構造 그리고 價値의 一方의인 增進은 開發途上國들의 發展을 阻害해은 先進國들의 組織的行動의 結果라는 것이 大多數 貧困國들의 見解이다.

이것은 大部分의 技術이 主로 先進國의 多國籍企業들에 의해 開發, 占有되고 있다는 事實에 密接히 聯關되는 것이다. 그 實例로서 登錄된 모든 特許權의 90%가 이들 多國籍 내지는 巨大企業들에 의해 獨占되다시피하고 있다.

商業, 金融 및 技術의 流通——이 모두 第3世

界國家들에 의해 統治手段으로서 認識되고 있음——은 바로 이들 開發途上國들의 要求對象이 된다.

本稿의 標題로 내세운 이른바 “新國際經濟秩序”의 發想은 1973年末 알제리에서 開催된 非同盟國會議에서 淸楚한 것으로서 그 原則은 第29次 유엔總會에서 「國家의 經濟的 權利와 義務에 관한 憲章」에 採擇되었다.

1975年 9月 유엔 第7次特別總會에서 위 憲章의 細部條項들이 妥結을 보게 되었고 같은 해에 시작된 이른바 “南北對話”에서 이 問題가 처음 다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滿4年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1978年에야 매듭을 보게되었다. 따라서 넓은 意味에서의 새로운 經濟秩序라는 課題는 1976年 5月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通商開發會議(UNCTAD)에서 本格的으로 論議되었으나 아직은 部分的인 成果만을 거두었을뿐 開發途上國 政府들이 要求하는 滿足할만한 結果는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 多少間의 進展事項이 있다면 그것은 先進工業國들이 가난한 低開發國들의 政府負債額을 輕減해준다는데 同意를 한것이라 하겠다.

新國際經濟秩序 提두리안에서 開發途上諸國政府들은 表面的으로 또는 內面的으로 基本的인 必須戰略을 가지고 이 새로운 世界秩序에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世界秩序의 變化속에는 低開發國들의 가난한 國民들이 基本的인 必須要求 즉 衣食住과 訓練 및 雇傭問題에 있어 저들의 滿足이 채워지리라는데 肯定的反應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76年初 國際勞動機構

(ILO)가 펴낸 「雇傭, 成長 및 基本要求戰略」이란 冊子에 新國際經濟秩序에 대한 肯定的反應이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이밖에 「國際秩序의 再定立」이란 冊에서도 그같은 傾向이 如實히 들어나 있다.

1977年 1月 未來學의 泰頭 허어만·칸 博士는 「1976년에 一部 사람들이 크게 期待하였던 事態는 發生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現實創造, 즉 新國際經濟秩序가 變遷하는 國際秩序에 對抗하여 胎動하였다」고 말했다. 아무튼 하나의 새로운 秩序가 찾아와 世界經濟는 着實히 그리고 急激하게 變化를 가져옴으로써 모든 國家가 이 現實에 對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先進工業國으로부터 後進開發途上國으로의 技術移轉은 新國際經濟秩序의 再定立問題와 더불어 하나의 國際的 issue로서 擡頭하게 되었다.

지난 20年間 開發途上諸國의 企業이나 關係機關들에 대하여 特許權이나 노우하우의 라이선싱을 위해 民間베이스에 의한 技術傳授를 위한 國際的 내지 國家的次元에서의 法律의 根據를 마련하고자 많은 構想이 오고 갔다.

지금으로부터 約 20年前 로마條約이 締結될 當時 이미 새로운 國際經濟活動期가 시작되었으며 이로부터 특히 美國의 實業人들과 그들의 法律諮問들은 活氣를 回復한 유럽市場에 눈을 들렸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地域 그리고 아프리카의 新生獨立國들도 그들의 좋은 活動舞臺가 되리라고 希望하였으나 1960年代와 70年代에 있어 中東이 世界에 너지資源의 寶庫일 뿐만 아니라 工產品의 커다란 消費市場이 되리라고는 거의 아무도 豫測하지 못했었다. 이것은 큰 誤判이었다.

## ② 技術移轉과 國際動向

지난 1975年 5月 國家間的 技術移轉問題를 調停하기 위한 技術移轉行爲規範의 基礎가 될 草案大綱을 마련하기 위해 政府間專門家會議가 構成되어 이 問題를 本格的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브라질專門家에 의해 77그룹의 이름으로 政府間專門家會議에 提出된 이 規範은 Pugwash Code에 基礎를 두고 있다.

뒤이어 同年 11月에는 日本專門家에 의해 또

하나의 草案이 西方先進國그룹의 이름으로 유엔 通商開發會議(UNCTAD)技術移轉委員會에 提出되었는데 이 草案은 이보다 앞서 同年 10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主導下에 파리에서 召集된바 있는 B그룹會議에 提出된 提案에 基礎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國際技術移轉行爲規範을 다룬 草案들이 많이 나왔으나 이들 大部分이 開發途上諸國에 대한 特別待遇와 國際的統一을 主張하고 있다.

한편 經濟, 商業 및 開發部門과 關聯한 技術移轉問題에 있어 國際特許制度 즉, 파리協約의 機能에 대하여 UNCTAD만큼 크게 寄與한 國際機構도 드물 것이다. 1975년에는 유엔經濟社會局과 UNCTAD 및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가 共同으로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移轉問題에 있어 特許制度의 役割」이란 題下의 한 報告書를 作成하였고 이어서 1977年 6月에 UNCTAD單獨으로 「國際特許制度: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의 改正」이란 研究報告書를 냈다. 同年 8月에는 UNCTAD決議案 88號에 따라서 技術移轉상의 工業所有權의 役割에 관한 政府專門家會議가 召集되어 WIPO主權下에 파리協約改正을 위한 政府間準備委員會로 하여금 前記 UNCTAD報告書를 研究檢討토록 하였다.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파리協約의 改正問題로 UNCTAD는 會議를 거듭하였고 지난 8월에는 비엔나에서 會議를 갖고 先進工業地域과 低開發地域 그리고 共產地域으로 3분된 各그룹으로부터 그간 研究檢討된 報告書에 따라 파리協約改正方向을 模索하였다. 파리協約의 改正方向은 어디까지나 開發途上國들이 外國技術을 導入, 活用하는데 있어 보다 容易하게 하기위한 쪽으로 흐르고 있으나 파리協約의 改正으로 果然 後進國들의 經濟開發이 어느만큼 促進될런지는 未知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先進市場經濟制度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이들 先進市場經濟國들의 政治, 經濟 및 社會概念은 開發途上國들이 그것과 判異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展望과 期待

파리協約改正으로 파리同盟은 開發途上諸國에 대한 法律的一技術的援助를 통해서 이들의 發展

을 돕는다는 새로운 條項이 追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 支援方法으로는 開發途上諸國의 工業所有權法과 行政의 現代化를 비롯하여 工業所有權의 活用促進을 위한 國家的 또는 地域的規模의 獎勵機構의 設立, 特許技術文獻의 效率의 活用, 工業所有權制度에 依據한 利潤動機의 賦與를 통한 國內發明 및 技術革新風土造成 그리고 海外技術取得 및 國內技術 내지 國內產品輸出과 關聯한 工業所有權活用の 極大化등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技術의 國際的交流促進을 위한 이와같은 努力의 한가지 뚜렷한 實證의 資料로서 作成 配布된바 있는 “發明 및 노우하우에 관한 開發途上諸國의 新모델法”을 들 수 있다. 이 모델法은 完成되는데로 1965年 WIPO의 前身인 BIRPI가 作成한 既存모델法과가 代置되어 開發途上諸國으로 하여금 저들의 國內特許法의 現代化에 필요한 立法道具로서 活用토록 提供되었다.

그러한 新모델法은 先進國과 後進國등 19個國에서 各各 差出된 專門家들로 構成되는 實務團에 의해 準備되어 78年末에 出版, 配布되었다. 이 모델法은 특히 開發途上國이 技術을 取得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으며 細部條項에서는 發明特許 및 노우하우등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技術의 移轉에 관한 要點들을 明示하고 있다. 한편 이 모델法의 趣旨는 開發途上國政府의 全般의 經濟目標에 符合되는 條件에 따라 技術을 導入하되 技術供與者側은 當該技術의 開發投資에 대한 給付는 回收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技術導入國政府의 經濟的目的과 符合되어 이루어지는 技術讓受渡契約을 保障하는 手段의 하나로서 노우하우契約, 特許 또는 特許出願讓與契約 그밖에 技術讓受渡에 따른 一切의 라이선스契約은 반드시 政府機關에 의해 登錄시킨다는 것이다. 이 모델法의 骨子를 좀더 具體적으로 考察하면 同法 第3部에서는 上記契約들의 審査 및 登錄을 위한 法律上 그리고 行政上의 指針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령 政府의 經濟政策에 反하는 內容의 技術은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다는가 하는 18個 制限條件들이 따른다. 아무리 契約條件이 全體적으로 보아서는 政府方針에 비추어 妥當하다하더라도 18個制限條件中 하나만이라도 低觸되면 技術讓受渡契約의 登錄이

拒絕되는 것이다.

그러나 世界知의 所有權機構(WIPO)가 마련한 技術移轉과 관련된 法規에서는 이와같은 制限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WIPO法規는 工業所有權의 國際法의 制度를 改善하고 發明과 노우하우에 관련된 開發途上諸國의 國內立法을 위한 모델法의 基礎를 現代化하는 作業을 支援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이밖에 WIPO는 開發途上國들의 企業이나 政府機關이 外國의 先進技術을 導入하는데 따른 技術情報의 理解促進을 비롯, 技術供與者들과의 라이선스契約交涉支援 그리고 技術移轉契約締結過程에서 發生하기 쉬운 諸般問題의 解決등의 方法으로 技術의 國際的 傳播普及를 支援하고 있다.

#### 4 結 論

가장 最近의 것으로서 지난해 3월에 WIPO는 工業所有權開發協力委員會를 통하여 技術移轉問題를 다루는 國內法下에서 開發途上國의 政府官吏들의 行政的手段을 돕기 위한 技術移轉案內書를 準備하도록 國際事務局에 一任하였다. 이 準備作業에는 UNCTAD라든가 UN工業開發機構(UNIDO)같은 유엔專門機構들과의 協調下에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技術移轉問題야말로 世界の 貧富 즉 南北問題의 解決에 先行되어야 할 全世界의 課題인 것이다. 그런만큼 오늘날 이 問題에 있어 技術供與者나 技術導入者 그리고 政府의 態度는 라이선스契約의 期間이나 條件등에 대하여 크게 變化하고 있다.

技術導入者 특히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技術供與者가 主張하는 權利의 範圍에 關해 많은 問題를 擧論하면서 그들에게 可及의 많은 義務條項을 賦課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라이선스協定締結에 따른 技術導入國側의 地位向上과 自己네 立場에 대한 보다 깊은 理解促求努力이 最近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技術供與者立場에서는 從來와 같은 技術移轉方法을 止揚하고 導入者側에 대한 責任을 分明히 밝혀 줌으로써 技術移轉에 대한 바람직한 風土가 造成되고 따라서 技術의 國際交流에 의한 後進國의 經濟發展도 促進될 것이다. ☉